

동두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02. 3. 11 동두천시장이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2. 3. 11

다. 상정일자 : 제11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본회의 상정, 제안설명, 질의답변

제6차 본회의 상정, 토론 및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과 민원증명발급전용 및 무인민원발급기용 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을 사용케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하려고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무인민원발급기용 등의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-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하여 정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

이 개정조례안은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과 민원증명발급 전용 및 무인민원발급기용 공인을 사무관리규정 제21조, 제36조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의거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,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례개정이라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

“ 없 음 ”

6. 심 사 결 과

“ 원안가결 ”